

부칙 <제21065호, 2025. 10. 1.>(정부조직법)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. . . <생략> . . . 시행한다.

1. 및 2. 생략

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

제7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477>까지 생략

<478>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2항 중 "통계청장"을 "국가데이터처장"으로 한다.

<479>부터 <626>까지 생략

제8조 생략